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책방향

Policy of Party Contract

김 병 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행정사무관

1.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 현황

1-1. 단체수의계약제도

단체수의계약제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토록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2.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시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65년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단체수의계약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65. 9월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21개조합 181개 물품을

처음으로 지정 공고함으로써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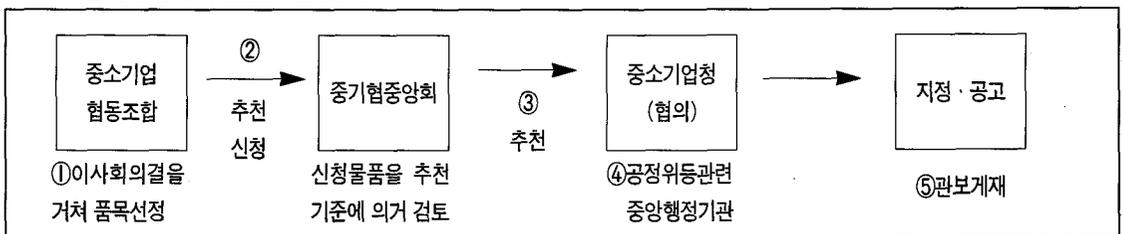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것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81.12.31)이 제정된 이후이다.

현재는 '94.12월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9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제9조(구매의증대)①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한다.

이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표 1]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절차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절차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장은 관련부처의장과 협의 절차를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지정·공고하고 있다.

- ① 조합에서 지정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이사회 결의
- ② 조합에서 중앙회에 지정신청
- ③ 중앙회에서는 조합에서 신청한 물품을 검토 후 중소기업청에 추천
- ④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각 물품의 정부주무부처 등에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부합되는지 여부를 협의
- ⑤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공고)

1-4.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실적

단체수의계약물품수는 '65년 21개 조합 181개

[표 2] 연도별 단체수의계약 운영실적 (단위: 억원, 개)

연도별	조합수	물품수	납품실적	참여업체수
1995	91	314	31,926	8,295
1996	91	289	33,716	8,612
1997	89	260	38,341	8,652
1998	94	258	37,866	8,329
1999	84	206	40,291	11,515
2000	77	154	42,235	11,755
2001	87	154	-	-

물품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83년 1,474개로 최고에 달한 후 거의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참여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77개 조합 11,57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단체수의계약 실적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4조 2235억원의 물품이 단체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되었다.

2.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및 물품 축소

2-1.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기능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구매기관의 구매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편의를 제고하며 납품업체의 도산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보수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합이 책임을 지므로써 제품구매에 따른 안정적인 A/S를 보장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우리나라경제의 대기업집중화를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중소기업간 경쟁도 배제하는 등의 경쟁 제한적 요소가 강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의존도가 높아 기술개발, 품질향상노력 미흡 등 중소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조합원에게 배정하면서 편중 배정하거나 연고 배정하는 등으로 지원효과가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등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2. 단체수의계약 물품 축소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 조합원을 확대하고, 소수 조합원의 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정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물량배정방법을 조정하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단체수의계약물품 수를 '99년부터 2001년까지 '98년 기준 물품수의(258개 물품) 20%씩 축소하기로 하고 98년 258개, '99년 206개, 2000년 154개 물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하고 2001년 물품으로 2000년보다 51개 물품이 줄어든 103개 물품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2를 개정하여 2001년 단체수의계약물품수를 2000년수준으로 유지토록 함에 따라 2001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2000년과 동일한 154개 물품을 지정하였다.

※제9조의2(구매대상물품의 지정)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에 대하여는 1998년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60이내로 한다.

3.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향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는 제도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여왔으나 일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경쟁입찰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제도이며 조합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의 부적정 배정 등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판로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한적인 요소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기능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하여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수요자(구매기관) 및 공급자(조합 및 조합원사), 단체수의계약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의 관공수 제도 등 조사 및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1년 1/4분기 중에 연구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연구 결과에 따라 2001년 4/4분기 중에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등 단체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ko](http://www.ko)